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6. 13.(목)자 조간용]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안범진

전확 031-475-4002 / 팩스 031-481-4512

보도자료 2019. 6. 13.(목)

자료문의 : 형사3부장실 전화번호 : 031-475-4035 주책임자 : 형사3부장 이병대

수사과장 정진수

제 목

12년 도망자 등 장기 재판 도피자 무더기 검거

- 장기 공판정 불출석 피고인 등 총 28명 검거 -

-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박순철)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로 장기간 고의적으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들에대해 검거전담반을 구성하고 2개월('19. 4. 1. ~ 5. 31.) 동안 집중적으로 검거활동을 벌인 결과 12년 도망자 등 총 28명을 검거하였음
- 앞으로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법의 엄정함과 사법정의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꾀를 찌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대안민국 안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교훈이 널리 전파되도록 검거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I 검거전담반 구성 등

- '19. 4. 1. 도망자 검거전담반(공판정 불출석 피고인 검거 T/F) 구성
- 총괄: 형사3부장검사, 팀장: 수사과장
- 팀원 : 수사과 호송팀(8명) 및 집행과 미집자 검거팀(2명) 등 총 10명
- 검거대상 선정 : 총 84명 중 67명 선정(국외출국자 등 제외)

Ш

검거활동 착수 배경

●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 들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피해자 들은 피해변제를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는 등 다수의 문제점 양산

①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

- 피고인들의 장기간 재판정 불출석으로 인한 장기간 재판 지연으로 사법 부는 물론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됨으로써 국가공권력 전체에 대하여도 불신하게 되는 사회 풍조 만연

② 궐석재판으로 인한 자유형 미집행자 다수 발생

- 일부 궐석재판이 가능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재판정 출석 없이도 선고가 이루어져 자유형 미집행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궐석 재판 선고로 인한 피고인의 부당한 상소권 회복 청구 우려

③ 피해회복 지연에 따른 민원야기 문제 발생

- 피해자들은 재판절차와 같이 진행되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회복을 기대하는 한편 재판의 출석과 피고인 측의 합의시도 노력을 통해 실질 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수년씩 지연됨으로써 피해회복이 계속적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경제적으로 어려 움을 겪게 되는 등 이중고 발생
- 또한 죄를 지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장기간 도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결과 초래

※ 2018. 9. 8.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 '국민청원'

- '17. 1.경 뺑소니 교통사고(피해자 2명, 1명 어깨 분쇄골절로 영구 후유장애)를 야기한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법원에서 법정 구속하지 않음) 2심 재판 진행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를 물을 사람이 없어 답답하다는 내용
- 이에 가해자를 속히 체포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임
- 이에 장기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검거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대두

Ш

대표적 검거사례

① 약 14억 원 편취 혐의 기소 후 12년째 도피중인 피고인 검거

- <u>AOO</u>(여, 52세), 특경가법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3건 병합 기소
 - ▶ 기소 : '07. 11. 22., 구속영장 발부 : '12. 3. 6.
 - 혐의 요지 : '05. 12.경 피해자로부터 6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위조한 이행각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약 14억 원 편취 등
 - 검거 경위
 - ·피고인은 딸의 주거지에 허위로 주민등록을 전입해놓고 실제 딸과는 같이 살지 않고 별도의 은신처에서 숨어지내며 약 12년간 도피
 - ·이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집중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빌려 사용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실시

- ·수일간의 추적 결과 피고인이 용인 소재 OO아파트에서 은신중인 것으로 잠정 확인
- · 그 후 6일 동안 위 아파트 앞에서 잠복하며 대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수시로 변동되는 바람에 추적에 혼선을 빚음
- · 추적 15일 만에 은신처 밖으로 나온 정황을 포착하고 급히 은신처로 출동하여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동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차량이 발견되었고, 이후 끈질긴 잠복 끝에 밖으로 나온 피고인 검거
- ※ 편취금액이 많아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피고인이 은신처에서 철저히 숨어지내면서 야간에만 은밀히 이동하여 검거에 어려움이 많았음.

② 뺑소니 교통사고 야기 후 10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피고인 검거

- <u>BOO(</u>남, 61세),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 기소 : '09. 6. 26., 구속영장 발부 : '11. 2. 23.
 - 혐의 요지: '06. 12.경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2주의 상해를 가하고 3,884,2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
 - 검거 경위
 - · 2007. 7.경 경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2년 가량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09. 5.경 검거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틈을 이용하여 2009. 6.경 기소된 후 또다시 도주한 후 10년 가량 도피행각을 벌임
 - ·이에 별정통신 및 카카오톡, 유선방송 가입정보 등을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안산 인근 은신처를 포착하였으나 3개월 가량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은신처에 들어오지 않아 검거에 실패

- · 그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이동경로 등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불규칙적 으로 가끔씩 은신처에 들어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동경로를 수시로 확인하며 수일간의 끈질긴 잠복 끝에 은신처에 들어온 피고인 검거
- ※ 뺑소니 교통사고 야기 후 <u>2년 가량 도주</u>하였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기소된 후 <u>또다시 10년 가량 도주행각을 벌인</u> 점으로 보아 피고인을 검거하지 않았다면 영구 미제 건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커 보임

③ 성폭행 혐의 기소 후 약 2년간 도피중인 피고인 검거

- COO(남, 47세), 강간
 - ▶ 기소 : '17. 7. 26., 선고 : '19. 5. 10. 징역 2년
 - 혐의 요지 : '17. 2.경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폭 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
 - 검거 경위
 - · 피고인이 강간죄로 기소된 후로 약 2년 가량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중인 것을 가족 등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피고 인이 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빌려 사용중인 정황 포착
 - · 그 후 피고인 사용 추정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동거인의 집에서 은밀히 숨어지내는 정황 포착
 - ·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일간 잠복하던 중 잠복한지 5일 만에 잠시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확인하고 즉시 검거
 - ▶ 성폭력범죄 피고인의 장기간 도주로 인한 추가범죄 가능성 및 사회불안 요인 신속 제거

④ 타청 공판정 불출석 피고인 검거 후 인계

- <u>DOO</u>(남, 69세), 공무집행방해
 - ▶ 기소 : '18. 10. 17., 구속영장 발부 : '19. 4. 29.
 - 혐의 요지 : '18. 5.경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손등을 네임펜으로 내리찍어 폭행
 - 검거 경위
 - · 공조를 통해 관내 기관에 출석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2일 간의 잠복 끝에 검거한 후 공조를 요청한 수워지검에 인계
 - ※ 별지 '공판정 불출석 피고인 등 검거 현황' 참조

IV

향후 계획

① 지속적인 검거활동으로 사법불신 해소 등에 기여

- 구속영장이 발부된 불출석 피고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법정에 세움으로써 법의 엄정함과 사법정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법불신 해소 등에 기여
 - ▶ <u>'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u>는 인식을 심어주어 일반적인 범죄예방효과를 높이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

② 검거대상 확대

- 체포·구속영장 발부 피의자까지 포함하여 검거대상을 확대하고 적극 적인 검거활동 전개
- 사전 공조를 통해 관내 소재가 파악된 타청 불출석 피고인 등에 대하여도 적극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검거한 후 신병 인계 예정임. 끝.

[별지]

공판정 불출석 피고인 등 검거 현황

순번	검거 날짜	이름	사건번호	죄명	비고
1	2019-04-03	가00	2018고단2505,	상해 등	불출석 피고인
2	2019-04-04	나00	2017고합 209	강간	11
3	2019-04-04	다00	2018고단3625	사기	11
4	2019-04-05	라00	2016고단2941	특가법(도주차량)등	п
5	2019-04-05	마이이	2018고단2485	사기	п
6	2019-04-05	바이이	2018고단1414	폭행	II
7	2019-04-07	사이이	2018고단3295	절도	п
8	2019-04-08	아00	2011고합34	재물손괴	11
9	2019-04-09	자이이	2018고단1434	사기	11
10	2019-04-09	차00	2018고단3588	폭행	п
11	2019-04-10	카이이	2009고단1850	특가법(도주차량)등	11
12	2019-04-10	타이이	2018고단733	사기	11
13	2019-04-11	파이이	2018고단4087	공용물건손상등	п
14	2019-04-12	하이이	2018고단3642	사기	11
15	2019-04-15	거00	2018고단498	특가법(도주치상)등	11
16	2019-04-15	너00	2007고합237	특경가법(사기)등	11
17	2019-04-17	더00	2018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1
18	2019-04-17	러00	2012고합280	특가법(도주차량)등	п
19	2019-04-17	머ㅇㅇ	2018고단37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11
20	2019-04-18	버OO	2018고단1806	사기	11
21	2019-04-18	서00	2018고단3778	사기	11
22	2019-04-22	어೦೦	2018고단3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1
23	2019-04-24	저00	2018고단2665	사기	11
24	2019-04-24	처00	2018고단2652	특수상해 등	11
25	2019-04-27	커00	2018고단2738	사기	11
26	2019-05-03	터00	2018고단28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11
27	2019-05-10	퍼00	2019형제119호	상해 등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28	2019-05-22	허00	2018고단5805호 (수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불출석 피고인 (수원지검)